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8. 5(수) 총 4매(본문 4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희수, 사무관 양정선, 주무관 이승철 • ☎ (044)201-3840, 3841
보 도 일 시		2015년 8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5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"중고차 가격 공개·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…"

- 8.6~9.15. 자동차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**중고자동차를 거래**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**가격정보**가 **제공**되고, **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**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. **국토교통부**(장관: 유일호)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**8월 6일부터**(기간 : 8.6 ~ 9.15, 40일간) **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**소비자 보호를 강화**하고, **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**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**불합리한 규제를 개선**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**중고자동차 가격 조사·산정 제도 도입**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('15.1.6)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**국민 불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**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소비자 보호 강화》

① 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제도 운영방안 마련

○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·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**가격조사·산정 서식마련, 가격조사·산정자의 교육방안**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

②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선

○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**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,**

- 민원빈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**부식, 시동모터** 등의 항목 추가 및 **침수·사고유무의 표기를 명확화** 하였으며,
-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**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**

③ 매매알선수수료 징수 근거 명확화

○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**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** 명확히 규정

④ 에어백의 재사용 금지

○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나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, **에어백은**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**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·파쇄**하도록 함

《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》

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

○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(폐차)과정에서 회수되어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 부품으로 **이력관리를 확대**하고,

-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**1개월 이상 보증** (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)하도록 개선

《기타 규제개선 등》

⑥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

○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되었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변경**

⑦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

○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·상태 확인을 위한 일시운행(시운전) 이외에는 도로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**판매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**하되, 판매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 없이 매매업자의 불편 규제를 해소

⑧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(시운전) 허용

○ 소비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 확인을 위한 **시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**하고,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**성능·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**에 한하여 **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**에서 시운전을 허용

□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**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**이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 "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"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(전화 : 044-201-3840, 팩스 044-201-5584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양정선사무관(☎ 044-201-38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